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22
----------	------------

제안년월일 : 2024년 3월 7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 본문과 비용추계서식에 사용된 ‘세입’, ‘세출’이라는 용어를 조례상 정의와 동일하게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으로 표기하여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비용추계 방법 등에 언급된 ‘세입’ · ‘세출’의 용어를 각각 ‘재정지출’ · ‘재정수입’으로 수정함(안 제5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세출과 세입” 을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으로,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를
“표시한다” 로 한다.

안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						
	○						
	소계(a)						
수입	○						
	○						
	소계(b)						
□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작성요령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재정지출의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분권·특별)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5. 덧붙이는 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부서명 또는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생략)</p> <p>② <u>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u></p> <p>③ ~ ⑦ (생략) ⑧ <u>비용추계 값의 표시 등 비용추계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별지 제2호서식] (앞쪽) ○○○안 비용추계서</p> <p>3. 비용추계의 결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연도</th> </tr>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th> </tr> <tr> <td rowspan="3">세입</td> <td>○</td> </tr> <tr> <td>○</td> </tr> <tr> <td>소계(a)</td> </tr> <tr> <td rowspan="3">세출</td> <td>○</td> </tr> <tr> <td>○</td> </tr> <tr> <td>소계(b)</td> </tr> <tr> <td colspan="2">□ 총 비용(a-b)</td> </tr> </table> <p>[별지 제2호서식] (뒤쪽)</p>	연도		구분		세입	○	○	소계(a)	세출	○	○	소계(b)	□ 총 비용(a-b)		<p>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⑦ (현행과 같음) <u><삭제></u></p> <p>[별지 제2호서식] (앞쪽) ○○○안 비용추계서</p> <p>3. 비용추계의 결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연도</th> </tr>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th> </tr> <tr> <td rowspan="3">세입</td> <td>○</td> </tr> <tr> <td>○</td> </tr> <tr> <td>소계(a)</td> </tr> <tr> <td rowspan="3">세출</td> <td>○</td> </tr> <tr> <td>○</td> </tr> <tr> <td>소계(b)</td> </tr> <tr> <td colspan="2">□ 총 비용(b-a)</td> </tr> </table> <p>[별지 제2호서식] (뒤쪽) (현행과 같음)</p>	연도		구분		세입	○	○	소계(a)	세출	○	○	소계(b)	□ 총 비용(b-a)		<p>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u>재정지출과 재정수입</u> ----- ----- --- 표시한다.</p> <p>③ ~ ⑦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p> <p>[별지 제2호서식] (앞쪽) ○○○안 비용추계서</p> <p>3. 비용추계의 결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연도</th> </tr>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th> </tr> <tr> <td rowspan="3">지출</td> <td>○</td> </tr> <tr> <td>○</td> </tr> <tr> <td>소계(a)</td> </tr> <tr> <td rowspan="3">수입</td> <td>○</td> </tr> <tr> <td>○</td> </tr> <tr> <td>소계(b)</td> </tr> <tr> <td colspan="2">□ 총 비용(a-b)</td> </tr> </table> <p>[별지 제2호서식] (뒤쪽)</p>	연도		구분		지출	○	○	소계(a)	수입	○	○	소계(b)	□ 총 비용(a-b)	
연도																																												
구분																																												
세입	○																																											
	○																																											
	소계(a)																																											
세출	○																																											
	○																																											
	소계(b)																																											
□ 총 비용(a-b)																																												
연도																																												
구분																																												
세입	○																																											
	○																																											
	소계(a)																																											
세출	○																																											
	○																																											
	소계(b)																																											
□ 총 비용(b-a)																																												
연도																																												
구분																																												
지출	○																																											
	○																																											
	소계(a)																																											
수입	○																																											
	○																																											
	소계(b)																																											
□ 총 비용(a-b)																																												

작성요령

1.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의안
이 시행되는 경우 서울
특별시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
문과 함께 명시한다.

작성요령

1.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재정지출-----
-----재정수입-----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1. “비용추계서”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을 “의원·위원회·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과 교육감”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세출과 세입”을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으로,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를 “표시한다”로 하고, 제5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6조 중 “시장과 교육감”을 “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발의하는”을 “발의 및 제안하는”으로, “재정분석담당 부서”를 “재정분석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과 교육감”을 “시장”으로, “각각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 및 서울시교육청 법제심의회”를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자료협조) 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의원·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						
	○						
	소계(a)						
수입	○						
	○						
	소계(b)						
□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작성요령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재정지출의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분권·특별)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5. 덧붙이는 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부서명 또는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u> <u>의회 의원</u>·<u>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u>·<u>서울특별시장</u>·<u>서울특별시 교육감</u>이 <u>서울특별시의회</u>에 각각 제출하거나 발의,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비용추계서”라 함은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u>(이하 “의원”이라 한다)·<u>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u>서울특별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u>서울특별시 교육감</u>(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p>	<p><u>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u> <u>회의의원</u>·<u>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u>·<u>서울특별시장</u>-----</p> <p>-----</p> <p>-----</p> <p>-----</p> <p>-----</p> <p>-----</p> <p>-----</p> <p>제2조(정의) -----</p> <p>----- 뜻은 -----</p> <p>1. “비용추계서”란 <u>서울특별시의회의원</u>(이하 “의원”이라 한다)·<u>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u>서울특별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p>

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라 함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라 함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 · 위원회 · 시장 · 교육감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 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비용추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란 일반회계 · 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이란 -----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 · 위원회 · 시장-----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계 의뢰서를 첨부한 경우 의원 또는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 전까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의 내용·서식 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생략)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③ ~ ⑦ (생략)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1항-----

④·⑤ (현행과 같음)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

----- 시장-----

-----.

② -----
별지 제2호서식-----.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

-----표시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비용추계 값의 표시 등 비용추계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과 교육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협의)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이 각각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 및 서울시교육청 법제심의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그 심의회에

<삭 제>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

-----.

제7조(작성부서 및 협의) ① -----

---- 발의 및 제안하는 -----
----- 재정분석담당관-----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
--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
의 -----

-----.

부쳐야 한다.

④ (생략)

<신설>

제8조 (생략)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자료협조) 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의원·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